

보도자료

2011년 9월 29일(목)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김영문 과장(☎3400-2301)
전파보호과 김장순 사무관(☎3400-2330) kjs625@kcc.go.kr

전기통신 설비제공¹⁾ 가이드라인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의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제공 및 이용 관련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무제공사업자(KT) 및 이용사업자(SKB, LGU+, SO 등)의 의견수렴을 걸쳐 설비제공 제도 개선사항이 반영된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제공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9년말에 KT-KTF합병으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가 제정된 이래 의무제공사업자인 KT가 관로, 전주 등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절차, 조건, 시스템, 대가기준 등이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제공범위에 대한 이견과 무단사용 등의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동가이드라인은 ① 인상분선관로²⁾ 제공조건 및 제공대가 신설, ② 비 인입관로³⁾ 제공조건 보완, ③ 무단 사용설비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의무제공사업자(KT)가 자신의 전기통신설비(전주, 관로, 케이블 등)를 이용사업자(SKB, LGU+, SO 등)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는 제도

2) 지중 통신맨홀에서 지상 전주간에 케이블 포설을 위해 구성되는 관로

3) 지중 통신맨홀과 통신맨홀사이에 케이블 포설을 위해 구성되는 관로

1. 인상분선관로를 KT 의무제공대상설비에 새로이 포함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2. 비 인입관로는 KT가 운용중인 관로라도 예비관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운용중인 관로(외관)에 내관만 있고 2개 이상의 내관 추가부설이 가능한 경우 이용사업자가 2개의 내관을 부설하여 1개는 해당 사업자가 사용하고, 나머지 1개는 KT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3. 이용사업자가 KT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3주 이내에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3회 불응 시 해당사업자의 설비제공 요청을 1개월 이내로 제한할 수 하도록 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이용사업자의 설비 이용이 활성화되고 사업자간 경쟁여건이 개선되어 나아가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도 전기통신설비 제공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현장실태 조사 및 분쟁사항 조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제공 가이드라인』 1부.
2. KT 의무제공대상설비. 끝.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제공 가이드라인

1. 인상분선관로

- 인상분선관로(지중맨홀⇔지상전주간)를 의무제공대상설비에 포함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설비제공
- 제공조건
 - 인입관로 제공조건을 준용하고, 슬림형 내관을 부설할 수 있도록 허용
 - 맨홀에서 전주로 인상 뿐만 아니라, 전주에서 맨홀로도 입하 허용
- 제공대가
 - 인입관로의 의무제공 이용대가 적용
 - 단, 한 구간에 인상분선관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 거리의 합이 100m 미만이면 인입관로의 최소이용거리인 100m단가를 적용하고, 100m 이상이면 그 거리에 인입관로의 미터당 단가를 곱하여 대가 산정

2. 비 인입관로

- 예비관로(외관 1공)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용중인 관로(외관)에 내관만 있고 그 관로(외관)에 2공이상 내관 추가 부설이 가능한 경우, 이용사업자가 내관 2공을 부설하여 1공은 해당 이용사업자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KT에 이전

3. 무단사용설비 조치방안

- 무단사용적발 시 3주 이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함
 - 단, 부득이한 경우 3주 이내 철거 및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고 3개월 이내 시행 완료한다
- 타당한 사유없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에 3회 불응 시 설비제공 관련 관계기관과 사전 조정을 거친 후 해당사업자의 설비제공요청을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 무단사용설비의 정비에 적극 협조한다
- 무단사용설비 자진신고 시에는 본 조치방안에서 제외하고, 기존 협정서를 따른다

4. 시행일 : 2011. 10. 01.(신규 신청건부터 적용) ~

5. 본 가이드라인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0-55호)”과 함께 운영 됨

